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안내

□ 아동급식 지원사업

- (지원연령)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식사 해결 시 지원대상 x
-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가구의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
 -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 소득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결식이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등 →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필요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 대상자 선정 후 **3개월간 한시 지원**
- (지원방법)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1일 1식 지원
 - 아이누리카드(아동급식카드) 발급 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이용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9.15.(수)~9. 30.(목) ※ 예산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필요서류

- ① 아동급식신청(추천)서
- ② 결식우려 증빙서류 : 진단서,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등

□ 신청 시 주의 사항

- 기존 아동급식 지원대상 신청 제외
- 지원 기간(3개월) 종료 후 계속 지원 필요할 시 재신청 및 재심의 필요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950,472	32,863	7,856	34,292
2인	1,605,801	56,117	13,966	57,321
3인	2,071,654	71,488	26,313	71,965
4인	2,535,671	87,455	56,400	88,308
5인	2,993,834	102,900	85,592	103,013
6인	3,446,874	118,277	114,819	119,640
7인	3,898,543	134,052	125,597	135,618
8인	4,350,212	150,082	147,661	151,840
9인	4,801,882	165,974	168,376	168,196
10인	5,253,551	182,547	190,403	185,381

< 지원 관련 문의 >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대덕구청	608-6563	송촌동	608-5719	석봉동	608-5814
오정동	608-5625	중리동	608-5729	덕암동	608-5826
대화동	608-5654	법1동	608-5749	목상동	608-5845
회덕동	608-5673	법2동	608-5765		
비래동	608-5692	신탄진동	608-5977		